



## GATT UR이후의 세계농약산업 전망

협정이행위해 법령정비, 정책변화 불가피

# EU수요 감소해도 업계전망 밝다

조사홍보부

이 글은 <Pesticide Outlook>

94년 12월호에 게재된

Leslie Berger 의 「농약산업: 무역과 자국정책의 변화」를 번역한 것이다.

Leslie Berger는 주영미대사관의 농무관이었고, 주영미대사관 근무 이전에는 미농무성에서 주로 GATT 통상협상 및 농산물 시장 문제를 4년간(86~90)

담당했었다. 그녀는 미국의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의 농업문제를 다룬 적도 있다. 현재는 공직을 그만두고 농업전문역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註>

GATT UR과 기타법률의 이행은 향후 10년이상 농약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보고서는 250억달러규모의 농약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특히 농약생산과 소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는 최근 GATT협정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내의 법령에 대한 전망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국가적 조치가 농약의 생산, 등록, 무역에 보다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GATT차원 이상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각국의 법령은 GATT UR의 타결 양상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GATT에서 농약생산과 무역에 관련된 주요한 3분야는 농업, 산업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지적소유권이다.

### GATT의 농업협정

농업협정은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시장접근,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가 포함된다. 협정

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6년의 이행준비기간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한대로 이행되느냐는 그 기간 이전에 GATT 회원국 정부의 비준에 좌우될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의 수출은 1986~1990기준기간에 비교하여 양적인 면에서 21%, 예산지출면에서는 36% 감소될 것이다. 국내지원은 1986~1988년에 비하여 약 2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조는 미국의 결손보전비용이나 유럽연합의 보상비와 같이 non-trade distorting(비무역 장벽)은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모든 관세는 최소한 15%정도, 모든 농산물에 대한 총량 관세수준은 6년동안 약 36% 감소시켜야 한다. 모든 비관세 장벽들은 관세로 전환 될 것이며 이 관세는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보상금이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농산물에 따라서는 교역을 증진시킬 것이며 각국은 관세 절감에 대한 하나의 세월에 동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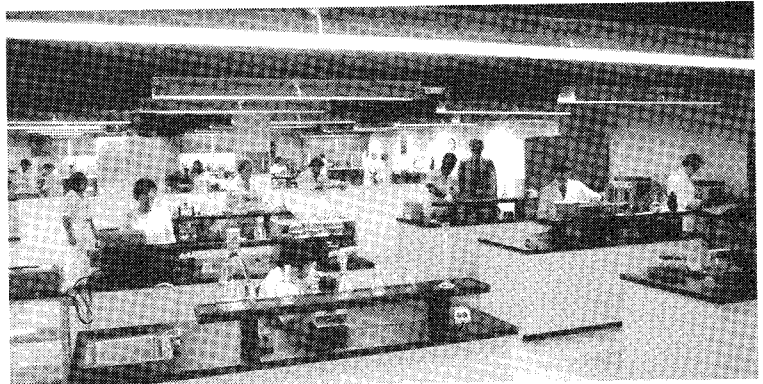
야 한다. 따라서 시장접근은 모든 농산물과 모든 GATT회원국들의 교역을 향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GATT규정은 비합리적인 위생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들에게 무역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조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곡류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제한은 정부가 과잉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곡류생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약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의 농자재 거래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산물의 생산감축이다. 개선된 시장접근, 특히 개도국들의 선진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개도국에서 농약의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규정을 보완해 나가면 농산물의 교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은 교역대상 농산물의 농약잔류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의 일환으로 EU, 미국, 일본, 캐나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협정으로 인해 농약회사들은 전세계에 자사제품의 특허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 한국, 싱가포르, 체코, 슬로바키아와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은 화학물질 수입관세를 내리기 위해 “화학물질 조화” 계획에 동의하였다. 약 6.5% 이상의 관세를 화학물질에 부과하는 이들 국가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내에 관세를 6.5%로 내리기로 동의하였다.

6.5% 이하의 관세를 부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감면요구를 해서 는 안된다.

농약업계는 이 협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세계농약 생산량의 약40%를 소비하는 개발도상국은 반대하고 있다. 개도국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이들 지역에서 교역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

###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에 대한 협정은 농약

회사들이 전세계에 자사 제품의 특허획득을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GATT회원국들은 적절한 특허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허법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들은 특허조항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데 10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나의 특허가 승인되면 20년간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개도국이 특허권 보호를 승인하지 않거나 혹은 승인한다 해도 단지 7~8년 밖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현재 특허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일단 판매허가가 떨어지면 특허권이 승인되든 거부되든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판매의 독점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직 까지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농약회사들이 그들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기타 국내법령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유럽연합개혁, 특히 농경지의 강제적인 휴경으로 인해 이미 농약수요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ECPA (유럽작물보호협회)는 휴경을 실시한 첫해에 농약수요가 적어도 15%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럽연합의 농약사용이 1992년 이래로 약 10%정도 감소하였다는 일부회사들의 보고를 보면 ECPA의 예상은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용 공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휴경지의 이용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한 첫해는 대부분의 작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 영국화폐의 평가절하와 영국내의 극심하게 습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먹구름이 졌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공동농업정책 실시의 첫해에 농약사용이 특정작물에서는 증가하였다고 했다. 영국의 겨울밀 생산을 예로들면 농가들이 보다 집약적인 생산을 시도하여 1993년에는 농약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휴경지로 인해 농약사용이 감소됐지만 작물이 재배된 일부 농경지에서는 농약사용이 증가하였다. 공동농업정책의 첫해는 이 정책의 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충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했다.

공동농업정책의 2차전은 휴경지의 강조로 인해 좀더두고 봐야 되겠지만, 휴경지가 늘어나게 되면 유럽연합내의 농약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연합의 농약등록지침

유럽연합 농약등록지침(91/414/EEC)의 최근 수정안은 유럽연합내 농약의 생산, 마케팅 등에 충격을 줄 것이다.

EU내의 농약등록을 일치시킴으로써 한 회원국에 농약원제가 등록되면 모든 회원국에서 승인, 등록된다. 그러나 단제나 혼합제 같은 완제품은 국가별로 등록될 것이며 모든 회원국의 승인은 필요치 않다. EU내에서 서로가 등록을 인정해야 하는 농약원제 목록은 출간되지 않았다. 수정안의 농약등록방법을 명료하게 해야만 농약업계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비록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모두 채택할지는 다소 회의적이지만 그 영향으로 유럽연합내의 농약사용과 교역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한 각각의 수정안 특히 음용수에 대한 새로운 잔류허용치 설정을 포함하는 Annex VI은 유럽연합 농약사용을 위축시킬 것이다.

ECPA 따르면 새로운 유럽연합의 잔류허용치 수준은 WHO에서 설정한 것보다 현저히 낮다고 한다. ECPA는 WHO의 설정치가 보다 과학적이라 믿으며 유럽연합 지침의 수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미국의 농약등록 관련조항

미국 농약관련법의 주요 현안은 FFDCA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Delaney Clause>이다.

이 조항은 농약이 사람 혹은 동물에 암을 유발하는 어떠한 증거라도 밝혀지면 식품첨가물 잔류허용치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델라네이 조항의 "Zero tolerance"는 시행이 불가능하며 가공농산물과 비가공 농산물의 기준이 모호해지므로 최근 식품안전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법령에 따라 모든 식품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치는 소비자에게 위해하지 않은 "건강에 근거한 기준"에 의존하게 된다. EPA는 식품생산과 유통단계별로 각각의 잔류허용치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



GATT는 세계경제를 향상시켜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농약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이러한 새로운 법령이 현재 상태로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농약 사용은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등록법하에서 농약등록은 재검토될 것이며 현행기준과 부합시키기 위해 농약원제는 1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법은 미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수출을 금지시킬 것이다.

한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 나라에는 그 농약의 수출은 승인되지 않는다.

### 농약산업 전망은 긍정적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세계 농약의 60% 정도를 생산소비한다.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대서양 양쪽에 있는 산업

계의 대표들은 세계시장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 의문을 가졌다.

미국쪽의 농약업계는 GATT협정과 그에 따른 영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작물생산이 안정되므로 농약업계는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살포비율이 적은 제품의 선호로 농약원제의 총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신제품의 높은 이윤으로 인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NACA(미국농약협회)는 업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소유권과 식품위생, 동식물검역 문제를 열거하면서 GATT협정은 일반적으로 미국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ACA는 또한 농약에 대한 관세의 감소로 미국의 수출이 25억 달러로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개도국이 관세감소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익은 유럽이나 아시아와의 교역으로부터 많이 얻을 것이다.

미국내 정책변화로 인해 농약업계가 받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델라네이 조항의 수정을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업계대표들은 농약수요를 감소시키는 휴경제도 때문에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옛 소련의 농약시장 쇠퇴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공동농업정책과

GATT협정의 수출보조금 제한은 유럽에서 북아메리카까지 작물생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감소는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수요증가로 인해 상쇄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최근과 다가올 정책변화가 농약산업의 장래에 순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한 기술개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감경운, 보존경운, 무경운 기술과 같은 경향은 농약산업에 새로운 압력을 가할 것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제초제 저항성 작물품종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발은 향후 10년내에 작물보호산업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유럽의 농약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전망은 밝다.

기업형 농업의 지속은 농약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농약 등록체계의 개선과 특허법령에 의해 시장 질서는 더욱 정비될 것이다. 많은 주요시장에서 관세의 감소는 농약의 교역을 증대시킬 것이다.

GATT의 전체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전망은 긍정적이다. 세계경제의 향상으로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농약의 수요 또한 늘어나 교역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약정보**